

부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10월 9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10월 10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39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07. 10. 17) 상정
- 제139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07. 10. 17) 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감사실장 한 기 주)

가. 제안이유

- 주민감사청구를 위하여 연서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종전의 “20세 이상”에서 “19세 이상”으로 낮추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주민 감사 청구를 위하여 연서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종전의 “20세 이상”에서 “19세 이상”으로 변경함.

(안 제2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감사청구 주민총수의 변동은 없는가?</p>	<p>○ 감사청구 주민총수(200명)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, 연령만 조정을 하고자 함.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49호
의결 년월일	2007. 10. 26 (제139회)

제출년월일 : 2007. 10. 9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주민감사청구를 위하여 연서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종전의 “20세 이상”에서 “19세 이상”으로 낮추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주민감사청구를 위하여 연서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종전의 “20세 이상”에서 “19세 이상”으로 변경함.(안 제2조)

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”를 “부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6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20세 이상 주민총수의 200명 이상”을 “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”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</u>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감사청구 주민수)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<u>20세 이상 주민총수의 200명 이상</u>이어야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라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감사청구 주민수) -- 제16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<u>19세</u> 이상 주민 <u>200명 이상</u>----- -----.</p>